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4월 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 31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3. 31(화)	담당부서	전력시장과
담당과장	이옥헌 과장(044-203-5170)	담 당 자	하원석 사무관(044-203-5173) 이맹섭 주무관(044-203-5176)

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% 감면

- 4월 1일 ~ 9월 30일, 인터넷이나 콜센터로 신청 가능 -
- 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4월 8일부터 접수 시작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, 이하 산업부)**가 한국전력공사(사장 김종갑, 이하 한전)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**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본격 시행**한다.

□ 이는 **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「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」**과 **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「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」**에 대한 **후속조치**이다.

전기요금 감면 (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)

1. 지원 대상

□ 전기요금 감면은 **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**(경산, 봉화, 청도) 내 **주택용(비주거용에 한함)·산업용·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**이 그 대상이다.

○ 소상공인의 범위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'업종별 **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(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)**'에 해당된다.

2. 지원 내용

□ 전기요금 감면 신청 시 **6개월분(4~9월 청구요금) 전기요금의 50%(월 최대 60만원)를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**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.

□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**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**이다.

3. 신청 기한

□ **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**할 수 있으며,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(납부기한 4월 25일)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.

□ **요금을 이미 납부**하였거나, **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 감면을 신청**한 경우에는 **다음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**하는 방식으로 **소급적용**하여 **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**되도록 할 예정이다.

4. 신청 절차

□ 소상공인 유형별로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.

❶ 한전 계약 소상공인

(한전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,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)

- **한전 사이버지점(cyber.kepco.co.kr)이나 콜센터(국번없이 123)**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, 이때 **사업자 등록번호와**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**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.**

❷ 상가 입주 소상공인

(상가단위로 한전과 계약,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는 경우)

- **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 감면을 신청**하면 된다. 개별 입점 점포에서 **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신청서**를 제출하면, **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하여 한전 등에 일괄신청** 하면 된다.

❸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소상공인

(대구 다사 죽곡1·2지구 소상공인으로 (주)대성에너지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)

- **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**은 대성에너지 홈페이지(daesungenergy.com)에서 접수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**이메일(ki6092@korea.com) 또는 팩스(053-620-6547)를 통해 감면신청**이 가능하며, **사업자 등록번호**와 청구서에 기재된 **고객번호**를 준비해야 한다.

□ 한전은 **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**으로 **전기요금 감면을 우선 적용**하되 **소상공인 자격은 사후 확인할 계획이며,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** 이를 **신청자에게 통보**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**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**할 예정이다.

○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**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** 지원받은 **전기요금이 환수조치**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.

□ 이와 별개로, **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**를 이미 보유한

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 감면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**신속하게 요금감면 접수·신청이 가능**하다.

5. 기대 효과

□ 이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**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2,500원**(소상공인 월 평균 전기요금 125,000원의 50%), **6개월간 평균 총 375,000원의 부담경감 효과**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.

전기요금 납부유예 (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정액복지할인 가구)

1. 지원 대상

□ 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**주택용(비주거용에 한함)·일반용·산업용 전기**를 사용하는 **전국 소상공인** 및 **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**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상이·독립유공자)를 대상으로 적용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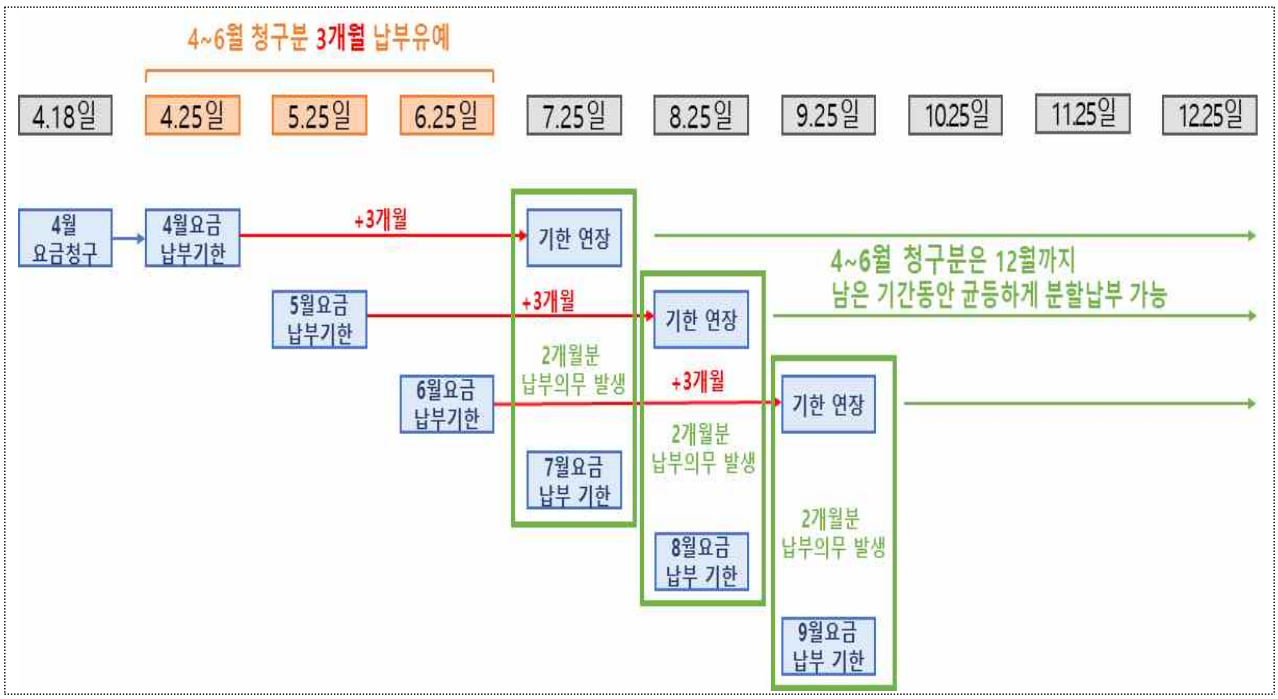
2. 지원 내용

□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**3개월분(4~6월 청구서) 요금**의 **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**되며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.

○ 또한 **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**에 대해서는 **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(12월)까지 균등분할 납부**가 가능하도록 하여 **전기요금 부담이 일시에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** 할 예정이다.

□ **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의 중복적용이 가능**하며, 전기요금 감면 신청 시 납부유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.

< 전기요금 납부유예 적용 예시 >



3. 신청 기한

□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4월 8일(수)부터 6월 30일(화)까지 가능하며, **당월 요금**에 대해 **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** 당월 청구서 상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.

○ 예를 들어 **4월 18일에 전달되는 4월 첫 번째 청구서**의 납기일은 **4월 25일**이므로, 18일에 청구서를 수령한 소비자는 **25일 전까지 신청해야 납기 연장을 적용**할 수 있다.

4. 신청 절차

□ 지원대상별로 아래 절차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.

❶ **한전 계약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 및 소상공인**

(한전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,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)

- 한전 사이버지점(cyber.kepco.co.kr) 또는 콜센터(국번없이 123)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, **주택용 복지할인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, 소상공인**은 **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**를 준비해야 한다.

❷ 고압 단일·종합계약 아파트 정액 복지할인 가구 및 상가 입주 소상공인

(아파트 또는 상가단위로 한전과 계약,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는 경우)

- **아파트 단위로 계약을 맺거나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으로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**되는 경우 **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**이 가능하다.

- **주택용 복지할인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없지만 소상공인**은 개별 입점 점포에서 **사업자 등록번호**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**관리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**이 가능하다.

❸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가구 및 소상공인

(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,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)

- **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 및 소상공인**은 지역별 사업자 **이메일 또는 팩스(별첨2)를 통해 신청**이 가능하다.

- **주택용 복지할인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없지만 소상공인**은 **고객번호** 및 **사업자 등록번호**를 준비해야 한다.

□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유예는 전기요금 감면과 동일하게 한전이 **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**으로 **전기요금 납부유예를 우선적으로 적용**한다.

○ 한전은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사후확인을 거쳐 **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** 이를 **통보**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**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**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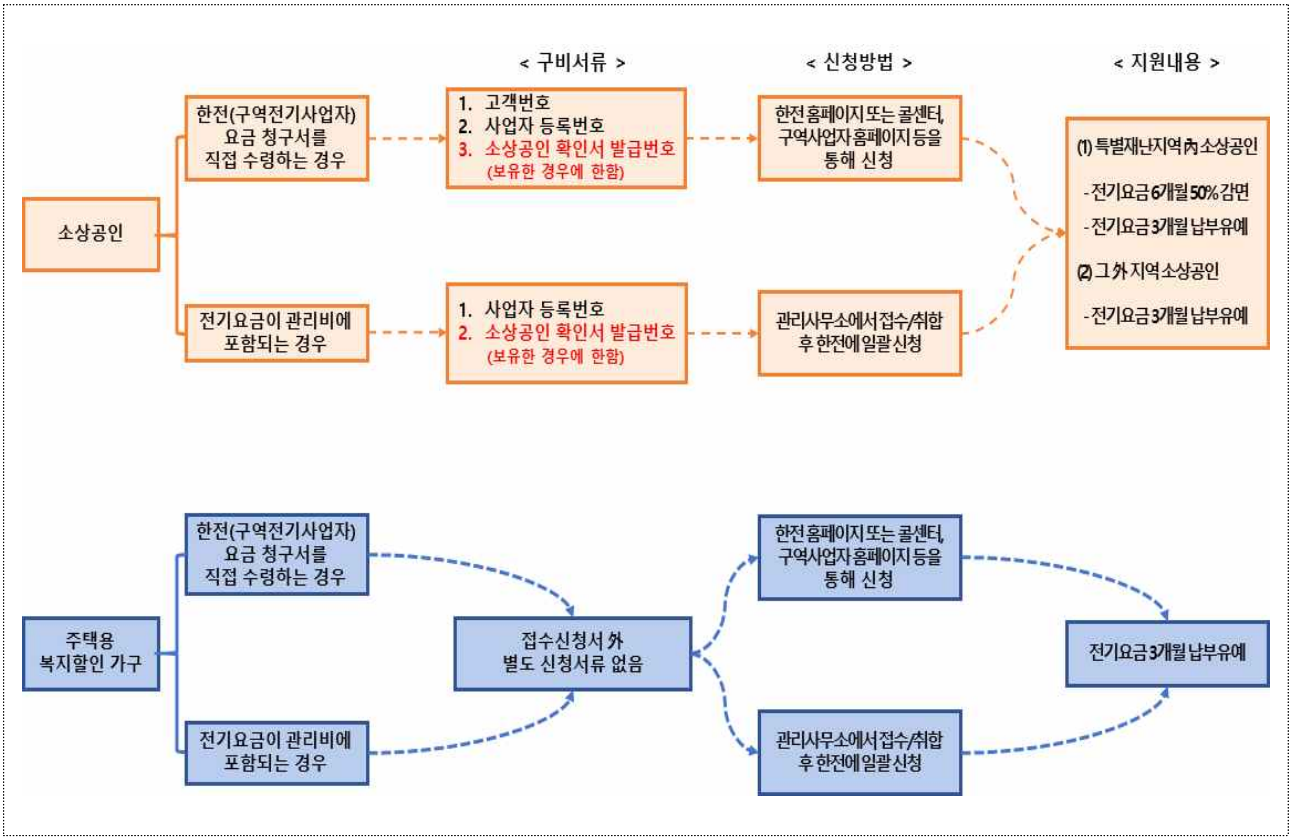
○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**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** 납기연장 적용이 취소되며, 미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적용된다.

□ **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**를 보유한 **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**하면 보다 **신속하게 납부유예 접수·신청이 가능**하다.

5. 기대효과

□ 이번 전기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통해 **4~6월 청구요금에 대한 납기가 3개월까지 연장**되며, 이 기간 동안에는 **전기요금 납부의무** 및 **미납 연체료(1.5%)가 발생하지 않으므로,**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**할 것으로 예상된다.

< 전기요금 경감방안 주요내용 요약 >



* 한전에서 사후적으로 검증한 결과,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(중기부 발급)를 한전에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시 요금감면액 환수 및 납부 유예 취소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하원석 사무관(☎ 044-203-5173), 이맹섭 주무관(☎ 044-203-5176), 한국전력공사 이진희 차장(☎ 061-345-4531),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별첨1 「소상공인보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매출액	상시근로자
1. 식료품 제조업	C10	매출액 120억원 이하	10인 미만
2. 음료 제조업	C11	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
15. 가구 제조업	C32	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5인 미만
17. 수도업	E36	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매출액 80억원 이하	5인 미만
19. 광업	B		10인 미만
20. 담배 제조업	C12	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
29. 건설업	F		
30. 운수 및 창고업	H		
31. 금융 및 보험업	K		5인 미만
32. 도매 및 소매업	G	매출액 50억원 이하	5인 미만
33. 정보통신업	J	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매출액 30억원 이하	5인 미만
35. 부동산업	L	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매출액 10억원 이하	10인 미만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	5인 미만
41. 교육 서비스업	P	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	

※ 비고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별첨2 지역별 구역전기사업자 현황 및 신청·접수처 안내

구분	사업자	공급구역	담당자(문의처)		
			이름	전화번호(e-mail)	FAX
서울	지역난방공사	가락한라 APT 동남권 유통단지	권소현 주임	02-3410-8624 (sohyeon1201@kdhc.co.kr)	02-3412-2484
			박창균 팀장	02-3410-8622 (knight75@kdhc.co.kr)	
		상암2지구	봉설희 과장	02-300-3373 (seri01@kdhc.co.kr)	02-372-2481
			김재현 팀장	02-300-3372 (kjh0219@kdhc.co.kr)	
	대성산업	신도림 디큐브시티	박민서 과장	02-2211-0013 (mspk0898@hanmail.net)	02-2211-0019
부산	부산정관에너지	부산 정관지구	전보경 사원	051-730-8913 (jbk@bjenergy.co.kr)	051-730-8989
			김경록 팀장	051-730-8911 (krkim@bjenergy.co.kr)	
대구	대성에너지	대구 죽곡지구	김형욱 사원	053-620-6542 (ki6092@korea.com)	053-620-6547
			이감열 사원	053-620-6512 (gunner79@korea.com)	
대전	CNCITY에너지	대전 학하지구	임소연 사원	042-824-7160 (djsmile99@cncity.co.kr)	042-336-5913
			조현진 사원	070-7702-5379 (hjcho@cncity.co.kr)	
경기	티피피	양주고읍지구	김환수 대리	031-847-0123 (kim.hwansu@tppc.co.kr)	031-853-5667
			조재범 팀장	031-847-4100 (cho.jb@tppc.co.kr)	
	삼천리	광명역세권지구	손연배 대리	02-3397-8517 (ybson0605@samchully.co.kr)	02-897-6475
	지역난방공사	고양삼송지구	고화정 주임	02-3156-4623 (hjko@kdhc.co.kr)	02-356-2491
			최경이 팀장	02-3156-4628 (choiky@kdhc.co.kr)	
충남	JB	천안청수지구	허진현 과장	041-620-1430 (okhjh@jbcorporation.com)	041-621-1401
	삼성물산	아산탕정지구	김충열 책임	041-544-8357 (chyeal.kim@samsung.com)	041-544-8355
			김창욱 선임	041-544-8357 (changuk.kim@samsung.com)	